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합88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5. E 주식회사

6. F

7. G 주식회사

8. H

9. I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임영택

변론 종결 2024. 6. 21.

판결 선고 2024. 8.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K 사이에 2021. 7. 26.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21년 제665호의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3,621,809,37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K'이라 한다) 및
원고들의 지위

1) K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다. O은 2015. 4.경 K을 인수하여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2) 원고들은 K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K에 대한 채권

원고들(원고들 중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K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A	원금 160,000,000원지연이자 연 12%	2021. 6. 5.부터 2021. 8. 20.까지 납품한 철근대금 채권(수원지방법원 2022머7095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 B	원금 332,056,160원지연이자 2021. 6. 30.부터 2022. 11.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020. 6. 15.부터 2020. 12. 14.까지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자재 임대료 등 채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가합5154)
원고 C	원금 232,532,100원지연이자 202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021. 4.경부터 10.경까지의 공사수급체 공사투입 원가 분담금 채권 및 하도급업체 23개로부터의 양수금 채권(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가합10660)
원고 D	원금 417,300,000원지연이자 2021. 8. 5.부터 2022. 7.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020. 4. 1.부터 2020. 7. 9.까지의 지체상금 채권(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9389)
원고 E	원금 540,000,000원지연이자 2021. 4. 29.부터 2023. 5.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020. 12. 19. 및 2020. 12. 23. 대여원리금 채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3608)
원고 F	원금 266,228,908원지연이자 2022. 8. 9.부터 2022. 9.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019. 5. 20.자 공사면허료 및 2019. 4. 30.자 공사도급계약의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58396)
원고	원금 692,881,577원지연이자 2022. 11.	2019. 4. 30.자 공사도급계약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

원고 A	원금 160,000,000원지연이자 연 12%	2021. 6. 5.부터 2021. 8. 20.까지 납품한 철근대금 채권(수원지방법원 2022머7095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G	25.부터 2023. 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일부청구 및 2019. 11. 30.부터 2020. 3. 3.까지의 지체상금 채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228)
원고 H	원금 119,805,001원지연이자 202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019. 8.부터 2020. 8. 30.까지의 하도급공사 및 2021. 3. 10.자 추가공사합의 대금 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5183)
원고 I	원금 182,090,000원지연이자 2021. 8. 11.부터 2022. 1.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021. 3.경부터 4.경까지 싱크대 제품 물품대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07597)
원고 J	원금 211,864,221원지연이자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020. 1.경 P 물품대금채권(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6355)

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대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K, O은 2019.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서대문구 Q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사업에 955,000,000원을 투자하면, K이 피고에게 준공시점 또는 2020. 10. 31.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원금 955,000,000원을 최우선 상환하고 사업종료 시 최소 세후 5억 원의 정산금을 우선 배당하기로 하며, O이 이러한 K의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제51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K, O은 2021. 7.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연대채무자 K, O에게 30억 원을 변제기를 2021. 8. 31.,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21년 제665호로 공정증서(을 제5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관련 소송 및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승계참가

1) K은 2020. 2. 13. R, S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1974호로 R, S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라 한다). 1) 2) K은 2022. 9. 21.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T, U, V,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X에게, 2022. 10. 17. Y, U에게 각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W은 2022. 10. 18. 승계참가하였다.

3) 피고는 2022.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채12566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K이 R, S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취하, 조정, 화해, 결정 등에 기해 지급받을

금원에 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11.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갑 제11호증). 피고는 2022. 11. 9.경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관련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23. 2. 8. 피고를 비롯한 K에 대한 다른 추심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합계액이 K의 공사대금채권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K의 R, S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승계참가인 W, 피고의 R, S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R, S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980호로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K의 추심채권자 원고 E, 원고 I,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이 승계참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23. 11. 15.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K의 R, S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승계참가인 W, 피고, 주식회사 Z, 원고 I, 원고 E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관련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승계참가한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A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R, S은 대법원 2023다316240호로 항소심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24. 4. 16.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그외 권리행사

1) 피고는 202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채125272호로 K의 AB 외 56명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22. 11. 4. 같은 법원 2022타채125621호로 K의 A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11. 8. 이를 각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2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채1367호로 K의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5. 10.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1, 5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K과 피고는 공모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우선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허위의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차용증, 각서, 채무상환계획서, 금전거래내역 등에는 피고와 K 사이의 금전거래 외에도 피고와

K 대표이사 ○ 개인과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점, 차용 당일 또는 익일에 걸쳐 송금과 수금을 반복하고 있어 통상적인 대여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거래내역상의 송금액에서 수금액을 뺀 차액은 1,875,066,355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의 대여금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K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다. 즉, 무자력 상태인 K은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로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하여 별지1(갑 제13호증) 기재와 같이 계산된 2023. 8. 31. 기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합계 3,621,809,374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5년경부터 K에 사업자금을 수차례 대여하여 왔고, 2019. 9. 29.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7. 26. K과 사이에, ① 위 시점의 미회수원금 27억 350만 원 및 미회수이자 7억 9,460만 원에다가 ②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배당금 5억 원을 더하여, K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3,998,1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그중 일부인 3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로 K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의 정리

-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 2)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툼이 없고, 사해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① K이 이 사건 대여계약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인지 여부,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이에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K이 이 사건 대여계약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0, 53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K이 이 사건 대여계약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2015. 12.경부터 K, O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K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였고, 2021. 7. 26. K에 대한 미수금 내역을 별지2 표(을 제42호증, 이하 '이 사건 미수금 현황표'라 한다)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사건 미수금 현황표에 기재된 내용은 일부 오기들을 제외하면 을 제43 내지 50, 53 내지 56, 58호증으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이라 한다)과 지급일, 지급금액이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2) 나) 또한, 피고와 K, O과 사이의 아래와 같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을 제1 내지 12, 14 내지 17, 20 내지 35, 37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대여시기, 상환일정, 계좌주 등은 이 사건 미수금 현황표,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과 상당부분 부합한다. 다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이 실제 입금액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 대여금의 미변제금액에 추가 대여금을 합산하거나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돈을 새로이 작성하는 차용증의 대여금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을1	19. 11. 5.	O (연대보증인 K)	대여금 170,000,000이자 5,000,000, 지연손해금 주당 5,000,000	19. 11. 15.
을2	19. 11. 25.	대여금 375,000,000(= 기존 175,000,000 + 추가 190,000,000)지연손해금 10일당 10,000,000	19. 12. 16.	
을3	19. 12. 19.	K	대여금 512,500,000(= 기존 225,000,000 + 추가 275,000,000)1/21 2억 상환 완료. 잔액 3억	20. 1. 16.
을4	20. 1. 9.	O	대여금 250,000,000 월 2.5%	20. 2. 8.
을5	20. 2. 7.	O (연대보증인 K)	대여금 250,000,000 월 2.5%	20. 4. 6.
을6	20. 2. 10.	O, K	대여금 300,000,000 이자 7,000,000	20. 2. 21.
을7	20. 2. 11.	대여금 300,000,000 이자 연 24%20/1/30 AF 10020/2/11 30020/2/11 95	20. 2. 28.	
을8	20. 2. 18.	O	대여금 300,000,000 이자 연 24%	20. 4. 21.
을9	20. 2. 21.	(연대보증인 K)	대여금 300,000,000 이자 연 24%	20. 3. 21.
을10	20. 3. 19.	O	대여금 200,000,000지연손해금 주당 5,000,000	20. 3. 19.
을11	20. 3. 25.	K (연대보증인 O)	대여금 270,000,000 이자 3,000,000	20. 3. 30.
을12	20. 3. 31.	대여금 500,000,000[300,000,000 (2/11), 200,000,000 (3/31) AG 이자 15 포함]	20. 4. 30.	
을14	20. 7. 31.	O	대여금 150,000,000 이자 연 24%	20. 8. 11.
을15	20. 8. 28.	K (연대보증인 O)	대여금 200,000,000	20. 9. 15.
을16	20. 8. 31.	대여금 350,000,000 이자 연 24%	20. 9. 4.	
을17	20.	O (연대보증인 K)	대여금 400,000,000	20. 9.

을1	19. 11. 5.	O (연대보증인 K)	대여금 170,000,000이자 5,000,000, 지연손해금 주당 5,000,000	19. 11. 15.
	9. 9.			29.
을20	21. 1. 30.	대여금 150,000,000	21. 2. 8.	
을21	21. 2. 9.	K (연대보증인 O)	대여금 170,000,000	21. 2. 16.
을22	21. 2. 18.	대여금 300,000,000	21. 2. 22.	
을23	21. 2. 22.	대여금 230,000,000	21. 3. 5.	
을24	21. 3. 5.	대여금 307,000,000(= 기존 237,000,000 + 추가 70,000,000)	21. 3. 10. 21. 3. 19.	
을25	21. 3. 25.	대여금 55,000,000	21. 4. 1.	
을26을27	21. 4. 5.	대여금 130,000,000	21. 4. 15.	
을28	21. 4. 12.	대여금 310,000,000(= AH 50,000,000 + 4/5 차용 130,000,000 + 4/12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여금 125,000,000 + 이자 5,000,000)	21. 4. 16.	
을29	21. 4. 16.	K	대여금 344,000,000	21. 4. 23. 21. 4. 30.
을30	21. 4. 28.	대여금 365,000,000	21. 4. 30.	
을31	21. 5. 7.	대여금 407,000,000	21. 5. 18.	
을32	21. 5. 10.	대여금 100,000,000	21. 5. 13.	
을33	21. 5. 27.	대여금 472,500,000	21. 6. 21.	
을34	21. 5. 31.	대여금 310,000,000지연손해금 주당 10,000,000	21. 6. 3.	
을35	21. 6. 11.	대여금 105,000,000	21. 6. 18.	

을1	19. 11. 5.	O (연대보증인 K)	대여금 170,000,000이자 5,000,000, 지연손해금 주당 5,000,000	19. 11. 15.
을37	21. 7. 16.	대여금 155,000,000	21. 7. 20.	

다)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의 수취인 계좌주는 O 과 K 측이 혼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적어도 ○ 개인계좌로 송금된 돈은 K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 개인계좌로 송금된 돈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에는 K이 채무자로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고³⁾, 이와 관련하여 증인 O은 "제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법인통장에 넣고, 다시 법인통장에서 자금회수가 되면 다시 제 개인통장을 거쳐서 입금을 시켜드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차입해서 제 개인용으로 쓰게 전혀 없습니다. 다 법인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켰고, 법인 용도로 돈을 썼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여기에 ① 이 사건 차용증 중 ○ 또는 K이 단독으로 차용인으로 기재된 것, O과 K이 공동으로 차용인으로 기재된 것, O이 주채무자로, K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것, K이 주채무자로, O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것 사이에 내용이나 형식상 별다른 구분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은 2020. 5. 29. ㉠ ○이 단독 차용인으로 기재된 2020. 1. 9.자 차용증(을 제4호증), ㉡ O, K이 함께 차용인으로 기재된 2020. 2. 10.자 차용증(을 제6호증) 및 2020. 2. 11.자 차용증(을 제7호증), ㉢ K이 차용인으로, ○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2020. 3. 31.자 차용증(을 제12호증)에 따른 각 금전거래에 관한 상환계획서(을 제13호증)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작성한 점, ③ 2020. 11. 17.자 약속서(을 제19호증) 상단 및 본문에는 채무자를 O, K이라고 표시하였음에도, 하단에는 차주를 O, 연대보증인을 K이라고 표기한 점, ④ 이 사건 차용증 중 2021년도에 작성된 것은 모두 K이 차용인, ○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21. 6. 11.자 각서(을 제36호증)에 기재된 채무자는 O, 연대보증인은 K이고 기재된 변제자금 조달 방식은 K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는 O과 K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개념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K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O 역시 같은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O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돈이라고 하여 전부 K의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O 개인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가 실제로 O의 개인채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 중 K의 채무와 O의 개인채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K에 대한 2021. 7. 26. 기준 K의 채무액이 이 사건 대여계약 및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3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상 차용 당일 또는 익일에 걸쳐 송금과 수금을 반복하고 있어 실제 대여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O은 "제가 돈을 차입할 때 늘 J 회장님은 언제까지 갚을 거냐라고 물어보시고 항상 차용증을 씁니다. 항상 씁니다. 제가 1억 원을 빌리든 얼마를 빌리든 간에. 차용증을 쓰면 변제기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변제기일에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날짜에 자금을 찍어 드린 거고, 또 J 회장님은 되게 좀 마음이 여리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회장님, 제가 꼭 좀 필요합니다. 이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주셔도 되는데 항상 저를 많이 예뻐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계속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돈을 계속 빌려주신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과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상 K 측의 피고에 대한 송금일이 일치하고 그 상환일 당일 또는 익일 다시 차용증이 작성되어 피고가 K 측에 대여금을 송금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4) 차용 당일 또는 익일에 걸쳐 송금이 반복되었다고 하여 실제 대여관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미수금 현황표에 기재된 2021. 7. 26. 기준 K의 채무액 3,998,100,000원(= 미회수 원금 2,703,500,000원 + 미회수 이자 794,600,000원 +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배당금 5억 원)은 기존에 부담하던 실제 채무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대여계약으로 K이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K과 O 계좌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송금액과 수금액 합산액의 차액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3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일부 원금이 누락되어 계산되거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2) 이 사건 대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K이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전체적으로 K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행위로 인해 K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 중 상당 부분에는 '피고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공증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5)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21. 7. 29.로부터 15개월가량이 지난 이후인 2022. 11. 4.에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채125667호)을 신청하고 이를 이유로 관련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그 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행사 역시 위 시점 이후 이루어진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자 2022타채125272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자 2022타채125621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0.자 2023타채1367 결정), ③ K은 관련 소송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소송고지를 하였고, 소송고지를 받은 채권자 중 W은 승계참가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두고 피고에게 K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육진

판사김민지

판사김나정

별지

1) 관련 소송에서 R, S은 K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2) 2024. 3. 14.자 준비서면 첨부 표 및 2024. 7. 19. 제출된 참고자료 참조.

3) 을 제3, 11, 25호증 등.

4) 을 제4, 5, 20, 21, 22, 23호증 등.